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2024학년도 제 1차 이사회회의록

- 회의 소집일 : 2023년 4월 22일
- 개최 일시 : 2023년 5월 9일(목) 오후 6시30분
- 장 소 :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회의실
- 개최예배 : 찬송-286장, 성경-에베소서 3:16-19
기도-한혜실 이사

구 분	이사	감사	계
임원 정수	12	2	14
재적 임원	12	2	14
출석 임원	7	1	8
결석 임원	5	1	6

1. 출석현황 :

참석이사	이철호, 박성광, 김찬기, 이병호, 신충식, 한혜실, 유명근	7명
결석이사	이진일, 윤육희, 조진웅, 윤용순, 윤정모	5명
참석감사	김현용	1명
결석감사	김현민	1명
배석자	박용선 사무국장	1명

2. 안 건 :

제 1호 의안	2023학년도 법인 결산(안)
제 2호 의안	2023학년도 교비 결산(안)
제 3호 의안	2023학년도 법인 및 교비 예산전용보고 (안)
제 4호 의안	교직원보수지급규정 및 세칙 개정(안)
제 5호 의안	기타(안)
	1.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명

3.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이사장이 재적이사 12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철호	김찬기	김영근
-----	-----	-----

4. 전차 회의록 접수 :

- 이사장이 전차 회의록(2024.2.5)의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병호 이사 등의
와 신충식 이사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5. 감사보고

- 이사장이 감사보고를 요청하니 김현용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
계규칙 제41조에 따라 법인과 대학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 결과 2023학년도 법인 및 대학의 재
산상황과 회계,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
고하고 추가로 법인 및 대학 운영에 관한 감사의견을 개진하다.

감사의견	내 용
-법인 : 법인전출금(법정 부담금 등) 확대 노력	법정부담금 전출율이 97%(20') → 167%(21') → 67%(22') → 61%(23')로 2021학년도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전출 확대 노력이 필요함
-대학 : 다양한 대학발전 기금 모금 방안 마련	특정 기관 또는 기부자를 통한 1회성 발전기금 모금과 함께 지속 적인 소액 기부자 확대 방안을 연구하여 다양한 기부자 확보도 필 요함

-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받기로 전원 동의하니 이사장이 2023학년도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받
기로 하였음을 선포하다.

6. 회의내용 :

제 1호 의안 : 2023학년도 법인 결산(안)

- 이철호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이 2023학년도 법인 결
산(안)을 설명하다.

구 분	금 액	비 고
2023 결산(A)	302,296,682원	
2023 예산(B)	311,039,682원	
증감(C)=(A)-(B)	743,047원	(감소)

- 심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박성광 이사의 동의와 유영근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
를 물으니 참석이사 7명 중 7명이 찬성하여, 2023학년도 법인 결산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 철 호	박 용 선	김 현 용
-------	-------	-------

제 2호 의안 : 2023학년도 교비 결산(안)

- 이철호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이 2023학년도 교비 결산(안)을 설명하다.

구 분	금 액	비 고
2023 결산(A)	8,503,873,989원	
2023 예산(B)	8,594,705,124원	
증감(C)=(A)-(B)	90,831,135원	(감소)

- 심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한혜실 이사의 동의와 이병호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7명 중 7명이 찬성하여, 2023학년도 교비 결산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3호 의안 : 2023학년도 법인 및 교비회계 예산 전용 보고 (안)

- 이철호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 아래와 같이 2023학년도 법인 및 교비회계 예산 전용 내용을 보고하다.

가. 법인 예산 전용 보고

- 박용선 사무국장이 2023학년도 법인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하다.

항 목	세 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최종 예산	전용사유
			증	감		
전출금	교원법정 전출금	교원사학연금 전출금	62,000,000		506,570	2023학년도 법정부담금 전출금액을 실제 법정부담금과 일치되도록 과다 계상된 법정전출금액 예산 전용
		교원건강보험 전출금	0	1,411,730		
		교원퇴직수당 전출금	52,100,000		60,560	
	직원법정 전출금	직원사학연금 전출금	43,900,000		844,600	
					43,055,400	

나. 교비 예산 전용 보고

- 박용선 사무국장이 2023학년도 교비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하다.

구분	과목			전용 예산 현황			전용사유
	관	항	목	예산액 (전용 전)	전용증감액	차감액 (전용 후)	
교비회계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	시설용역비	331,247,000	-160,000,000	171,247,000	하계방학 중 시설 개선을 위해 건축물관리비 예산 전용 편성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	건축물관리비	15,010,000	160,000,000	175,010,000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	시설용역비	329,247,000	1,729,000	330,976,000	학교 월정료 지급 및 시설 보수 등 부족분

이 철 호	박 용 선	김 영 석
-------	-------	-------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	장비관리비	64,454,500	- 1,729,000	62,725,500		
	고정자산 매입지출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집기비품 매입비	13,040,000	2,068,630	15,108,630		
	고정자산 매입지출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기계기구 매입비	44,402,010	- 2,000,000	42,402,010		
	고정자산 매입지출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도서구입비	29,600,000	- 68,630	29,531,370		
	연구학생 경비	학생경비	학생지원비	23,079,770	580,000	23,659,770		
	연구학생 경비	연구비	연구관리비	2,600,000	- 580,000	2,020,000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	건축물 관리비	325,162,020	27,057,650	352,219,670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	장비관리비	64,454,500	- 5,713,000	58,741,500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	조경관리비	8,244,000	- 182,000	8,062,000		
	관리운영비	운영비	교육훈련비	7,170,500	- 5,307,500	1,863,000		
	관리운영비	운영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12,000,000	- 736,900	11,263,100	예산충당을 위해 예 산 전용	
	관리운영비	운영비	기타운영비	22,517,000	- 638,550	21,878,450		
	관리운영비	운영비	복리후생비	18,600,000	- 4,647,650	13,952,350		
	관리운영비	운영비	일반용역비	15,200,000	- 174,620	15,025,380		
	관리운영비	운영비	행사비	13,757,400	- 167,490	13,589,910		
	관리운영비	운영비	회의비	3,819,000	- 1,086,970	2,732,030		
	관리운영비	일반관리비	소모품비	9,329,000	- 656,055	8,672,945		
	관리운영비	일반관리비	여비교통비	6,841,200	- 4,141,800	2,699,400		
	관리운영비	일반관리비	인쇄출판비	1,480,000	- 247,000	1,233,000		
	관리운영비	일반관리비	지급수수료	4,700,000	- 106,518	4,593,482		
	관리운영비	일반관리비	차량유지비	3,000,000	- 222,767	2,777,233		
	관리운영비	일반관리비	통신비	9,500,000	- 228,830	9,271,17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016,154	- 2,800,000	216,154		
비 회 계	고정자산 매입지출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집기비품 매입비	19,800,000	2,030,000	21,830,000		간호학부 컴퍼런스룸 집기구입비 증가로 예산 전용
	고정자산 매입지출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기계기구 매입비	15,000,000	- 2,030,000	12,970,000		
	고정자산 매입지출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집기비품 매입비	-	6,810,000	6,810,000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물품구입예산 부족 로 예산 전용
	고정자산 매입지출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기계기구 매입비	25,000,000	- 6,810,000	18,190,000		

- 심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병호 이사의 동의와 유영근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7명 중 7명이 찬성하여, 2023학년도 법인 및 교비회계 예산전용보고 안을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4호 의안 : 교직원보수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 이철호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 교직원 초임호봉획정 기준 변경 및 이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교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아래와 같이 「교직원 보수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이 철 호	박 용 선	김 원 복
-------------	-------------	-------------

- 교직원 보수 지급 규정 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6조(보수의 계산) 신규채용, 복직, 승급 및 갑봉의 경우에는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그 월액을 날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면직,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달 5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일 때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6조(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근무일수가 1월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보수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p>	<p>-월 만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상적 급여 계산방식(일할계산)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p>
<p>제9조(초임호봉의 확정) 교직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원과 일반공무원 보수표를 기준으로 교원은 교원 7호봉, 직원은 일반직 9급 1호봉으로 확정하며, 별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9.29.> 2. "삭제" <2016.9.29.> 3. "삭제" <2016.9.29.> 4. "삭제" <2016.9.29.> <p>② "삭제" <2016.9.29.></p>	<p>제9조(초임호봉의 확정) 교직원의 초임호봉 책정을 위한 인정 자격 및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사 2년 2) 박사 3년 3) <u>균경력(의무복무 기간만 해당) 100%</u> 4) 전임교원 경력은 4년제 대학 50%, 전문대학 30%로 산정하여 최대 1년 인정 5) 산업체 경력(임용 기준에 맞는 경력에 한함)을 50%로 산정하여 최대 2년 인정 2. 직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균경력(의무복무 기간만 해당) 100%</u> 2) 우리 대학 무기계약직 경력을 50%로 산정하여 최대 1년 인정 <p>② 제1항에서 정한 인정 경력 이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p>	<p>- 교원 및 직원의 초임호봉 확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p>
<p>제10조(호봉의 조정) 재직중 학위 또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호봉을 조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 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조정한다.</p>	<p>제10조(호봉의 조정 및 적용 기준일) 호봉 조정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호봉 변동의 효력은 총장 승인일부터 발생한다.</p> <p>-</p>	<p>-초임 호봉 확정 시 경력 산정 오류 이외의 경력 조정 사유가 발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p>
<p>제11조(승봉) ①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봉에 필요한 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② 승봉은 매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③ "신설"</p>	<p>제11조(승봉) ① 좌동 ② 승봉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③ 직원이 승진할 경우 해당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하여 적용한다.</p>	<p>-승봉도 인사의 내용이므로 총장 승인을 얻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직원 승진 시 1호봉 감하는 것(현재 시행기준)을 명문화 하고자 함</p>

9
김민호
가보리
김영웅

<p>제14조(특별승봉)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봉할 수 있다.</p>	<p>제14조(특별승봉) "삭제"</p>	<p>-특별승봉 제도를 규정에서 삭제하여 인사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p>														
<p><별표 1></p> <p>교직원 임용일 기준 호봉 확정 기준</p> <p>■ 교원</p> <table border="1" data-bbox="167 645 651 1173"> <thead> <tr> <th>적용대상</th> <th>경력인정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03. 2. 28 이전 임용 교원</td> <td>1. 학력호봉 2. 준경력 100% 3. 교육연구경력 100% 4. 산업체경력 100%</td> </tr> <tr> <td>2003.3.1 - 2006.2.28 임용 교원</td> <td>1. 학력호봉 2. 전임교원경력 100% 3. 준경력 100% 4. 교육연구경력 50% 5. 산업체경력 50%</td> </tr> <tr> <td>2006.3.1 - 2016.9.29 임용 교원</td> <td>1. 학력호봉 2. 전임교원경력 100% 3. 준경력 100% 4. 교육연구경력, 산업체 경력 중 최대 3년까지 인정</td> </tr> </tbody> </table> <p>■ 직원</p> <table border="1" data-bbox="167 1281 651 1543"> <thead> <tr> <th>적용대상</th> <th>경력인정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06.2.28. 이전 임용 직원</td> <td>1. 학력호봉 2. 준경력 100%</td> </tr> <tr> <td>2006.3.1.- 2016.9.29. 임용 직원</td> <td>1. 준경력 100% 2. 산업체 경력 최대 3년</td> </tr> </tbody> </table>	적용대상	경력인정내용	2003. 2. 28 이전 임용 교원	1. 학력호봉 2. 준경력 100% 3. 교육연구경력 100% 4. 산업체경력 100%	2003.3.1 - 2006.2.28 임용 교원	1. 학력호봉 2. 전임교원경력 100% 3. 준경력 100% 4. 교육연구경력 50% 5. 산업체경력 50%	2006.3.1 - 2016.9.29 임용 교원	1. 학력호봉 2. 전임교원경력 100% 3. 준경력 100% 4. 교육연구경력, 산업체 경력 중 최대 3년까지 인정	적용대상	경력인정내용	2006.2.28. 이전 임용 직원	1. 학력호봉 2. 준경력 100%	2006.3.1.- 2016.9.29. 임용 직원	1. 준경력 100% 2. 산업체 경력 최대 3년	<p><별표 1> 삭제</p>	<p>- 교직원 호봉 책정 기준이 명확하고 기존 교직원의 호봉 책정은 임명 당시 해당 규정에 맞게 적용된 것이므로 이를 규정에 명시하여 혼란을 가중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부칙 단서 조항으로 개정 전 교직원의 초임호봉회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함</p>
적용대상	경력인정내용															
2003. 2. 28 이전 임용 교원	1. 학력호봉 2. 준경력 100% 3. 교육연구경력 100% 4. 산업체경력 100%															
2003.3.1 - 2006.2.28 임용 교원	1. 학력호봉 2. 전임교원경력 100% 3. 준경력 100% 4. 교육연구경력 50% 5. 산업체경력 50%															
2006.3.1 - 2016.9.29 임용 교원	1. 학력호봉 2. 전임교원경력 100% 3. 준경력 100% 4. 교육연구경력, 산업체 경력 중 최대 3년까지 인정															
적용대상	경력인정내용															
2006.2.28. 이전 임용 직원	1. 학력호봉 2. 준경력 100%															
2006.3.1.- 2016.9.29. 임용 직원	1. 준경력 100% 2. 산업체 경력 최대 3년															
	<p>부 칙</p> <p>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초임호봉 확정은 임용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p>	<p>규정 개정 이전 임용자에 대한 호봉 확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표기함</p>														

- 교직원 보수 지급 세칙 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변경사유
<p>제3조(정근수당) ① 정근수당은 연 2회 7월 및 1월에 지급하며, 연 1회 지급금액은 해당</p>	<p>제3조(정근수당) ① 좌동</p>	<p>- 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확정된</p>

이 권호	가오리	김성봉
------	-----	-----

<p>월의 봉급(기본급)에 3항의 정근년수에 따른 별표 1의 정근을 비율에 따른다. 단, 각 회의 지급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하고 지급한다.</p> <p>② 1~6(7~12)월 계속 근무자는 7월(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지급액의 전액을 지급하되,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한 개월 수 비율로 지급한다.</p> <p>③ 정근년수는 재직 근속연수 및 기산호봉과 초임 호봉획정 당시 경력연수를 포함한다. 단, 교원의 경우 기산호봉의 학력(학사 기준 2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④ 정근년수는 교원은 호봉에서 학력(2년)을 감산하고 연봉피크 적용 대상자는 추가로 연봉피크 적용연수 2년차부터 1년을 가산한다. 직원의 경우는 호봉을 정근년수로 계산하되 승급자는 승급횟수 가산한다</p>	<p>② 좌동</p> <p>③ 정근년수는 초임호봉 획정 시 인정된 경력연수와 정규직으로 근무한 재직년수를 합하여 산정한다.</p> <p>④ "삭제"</p>	<p>초임호봉에 따라 정근년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하며 개정 전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 부칙으로 근거를 두어 기존 지급 내용에 변동을 없게 하고자 함</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세칙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정근년수 산정은 임용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p>	<p>규칙 개정 이전 임용자에 대한 정근년수 확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표기함</p>

- 심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유명근 이사의 동의와 이병호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7명 중 7명이 찬성하여, 「교직원보수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4호 의안 : 기타

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정

-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 이사회회의록 간서명자의 추천을 요청하니, 이철호 이사장, 김찬기 이사, 김현용 감사 이상 3명으로 하자는 유명근 이사의 동의와 신충식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모두 찬성하여 의결하다.

8. 폐회 선언 :

- 이사장이 폐회 성안을 요청하니 박성광 이사의 동의와 한혜실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이철호 이사장의 기도로 폐회를 선언하니 20시 15분이었다.

이철호	김찬기	김현용
-----	-----	-----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이 사 장 이 철 호

이철호

이 사 박 성 광

박성광

이 사 김 찬 기

김찬기

이 사 이 병 호

이병호

이 사 신 충 식

신충식

이 사 한 혜 실

한혜실

이 사 유 영 근

유영근

감 사 김 현 용

김현용

이철호	김찬기	김현용
-----	-----	-----